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2일,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6.)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교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석채취허가 관리에 대한 체계성, 연속성이 저하되고 재해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관리부실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황충연)

가. 토석채취 시 광업권자 등의 동의요건 정비

개정안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동의요건을 완화하여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토석채취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기간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고, 산림청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이 위치한 장, 절 및 조의 제목 등에서 “토석채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이 광구 내 위치할 경우”를 “토석채취가 이루어지는 구역이 광구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나. 토석채취 변경허가기준의 강화 등

개정안은 토석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토석채취량을 늘리기 위한 변경허가 신청하려는 자로 하여금 기존 허가와 관련된 토석채취방법, 각종 조치명령 등을 충실히 준수하고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합법적 토석채취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토사채취의 허가의 경우 기존 허가기준(제1호 및 제2호)에 외부토석의 반입 금지 기준을 추가 적용함으로써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외부골재가 반입되어 허가구역 내의 토사와 혼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산림골재의 품질변경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피해의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산림청도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28조제1항제7호다목과 관련해서는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없이 토석채취행위 등을 함으로써 받은 시설물 철거 또는 산지복구 명령”의 이행 완료라는 기존 허가와 무관한 별개의 사실을 변경허가 요건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결

부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그러나 토석채취허가 등을 통한 합법적인 토석채취행위는 현행법의 기본적인 목적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무단 토석채취행위에 따른 시설물 철거 또는 복구 명령의 이행”과 “토석채취허가의 변경허가”는 합법적 토석채취행위의 추구라는 목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둘째, 안 제27조제1항제7호나목 및 다목과 관련해서는 복구명령 이행의 대상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같은 호 가목 중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수정의견이 있음.

셋째, 변경허가기준을 규정하는 안 제7호를 수용할 경우, 안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다. 채석단지 지정 등에 조건 설정 근거 마련

개정안은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해서도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지 재해를 예방하고 산지경관의 보전 및 환경보호 등을 도모하여 체계적인 석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채석단지 지정 등에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

정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수단을 둬으로써 법적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해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붙인 조건의 이행 주체와 그 적용 범위가 중복 규정됨.

안 제29조제5항제4호에서는 조건의 이행 주체를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로 표현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신청에 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는 경우”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임.

따라서 안 제29조제5항제4호 중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를 법률안의 명확성 및 간결성 측면에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둘째, 안 제29조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경우”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직권에 의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은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안 제29조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

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경우”를 “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경우”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셋째, 안 제4항을 신설하는 경우 기존 제4항은 제5항이 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안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라. 부칙

안 부칙 제1조는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개정법률의 효력을 공포일부터 즉시 발생하도록 하되, 제2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단서를 두고 있음.

먼저, 시행일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의 정비 등 사전 준비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 시행의 시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또한, 제28조제1항제7호의 시행일과 관련해서 산림청 및 한국골재협회는 법 제37조제7항 등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대다수가 영세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들에게 개정규정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합법 행위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안 부칙 제1조와 관련해서는 산림청 및 한국골재협회의 유예기간 확대의견 등을 종합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 관계부처 이견을 고려하여 토석채취 시 사전동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강화되는 토석채취 변경허가기준의 적용 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보완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강화되는 토석채취 변경허가기준의 적용 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계부처 이견을 고려하여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시 사전동의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정함.

또한, 제도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 기간 및 사업자들이 개정규정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수정하고, 채석단지 지정조건에 관한 적용례가 채석단지 지정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 법 시행 이전에 신청한 자의 개정규정 적용 여부가 채석단지 지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수정하는 등 부칙의 일부 내용을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시 사전동의 기준을 현행 유지함(안 제27조 제1항).

나. 토석채취 변경허가기준에 복구명령 등의 이행 대상지가 기존 토석채취허가지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조문을 보완하고, 단서

를 추가하여 각 호의 내용이 최초허가에 적용되는지 변경허가에 적용되는지 그 적용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다. 채석단지 지정조건 보완에 따라 달라지는 항번호를 인용조항에 반영하도록 자구를 수정함(안 제29조제6항)

라.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하고, 토석채취 변경허가기준 보완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수정함(안 부칙 제1조).

마.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시 사전동의 기준을 현행 유지함에 따라 부칙의 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함(안 부칙 제2조).

바. 부칙의 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적용례의 조제목을 그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대상을 수정함(안 부칙 제3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실제 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이 광구 내 위치할 경우 광업권자”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광업권자”로 한다.

안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 중 “제37조제7항”을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면서 제37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44조제1항”을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면서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다만, 제7호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안 제29조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안 부칙 제1조 본문 중 “공포한”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으로 하고, 부칙 같은 조 단서 중 “6개월”을 “1년 6개월”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제7호”를 “제28조제1항제7호”로 한다.

안 부칙 제3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조건”으로 하고, 부칙 같은 조 중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을 “채석단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의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하려는 자는 <u>광업권자</u> 나 조광권자(租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 ----- ----- ----- ----- ----- ----- ----- <u>실제 토</u> <u>석을 채취하려는 구</u> <u>역이 광구 내 위치할</u> <u>경우 광업권자</u> ----- ----- ----- ----- ----- ----- -----.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 ----- ----- ----- ----- ----- ----- ----- <u>광업권</u> <u>자</u>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가. 해당 토석채
취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
면서 제2호에
따른 토석채취
방법을 준수했
을 것(토석채취
방법을 준수하
지 아니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을 받고, 그 이
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다)

나.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필요한 조
치 명령을 받
은 경우 그 명
령의 이행이
완료되었을 것

가. (개정안과 같
음)

나. 해당 토석채
취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
면서 제37조제
7항-----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는 해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정하는 경우 재해 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다
만, 제28조제1항
제7호의 개정규
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
례)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제7호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석채취

⑥ -----

-----제5항-----

-----.

부칙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이 경과한-----
-----.

-----1년 6
개월-----
-----.

제2조(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
례) 제28조제1항
제7호-----

	<u>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 ----- -.
	<u>제3조(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제3조(채석단지 지정조건에 관한 적용례) ----- ----- ----- -----채석단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와 제2호”를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토석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로 한다.

다만, 제7호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7. 허가받은 토석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토석채취량을 증가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면서 제2호에 따른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했을 것(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그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면서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었을 것

다.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면서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같은 항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었을 것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채석 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 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사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제4항 중 “제29조제4항제1호”를 “제29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49조제2호 중 “제29조제4항에”를 “제29조제5항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석채취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석단지 지정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석단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 (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와 제2 호만 해당한다)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단 서 신설>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 ----- ----- ----- -----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 ----- . 다만, 제7호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변 경허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 6. (생략) <신설>	1. ~ 6. (현행과 같음) 7. 허가받은 토석채취면적을 확 대하거나 토석채취량을 증가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 준을 충족할 것 가.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 라 토석을 채취하면서 제2 호에 따른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했을 것(토석채취방법 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제3 1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을 받고, 그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

② ~ ③ (생 략)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u>토석채취허가</u>를 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사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해제) ① ~ ③ (생 략) <u><신 설></u>	<u>라 토석을 채취하면서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었을 것</u> <u>다.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면서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같은 항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었을 것</u>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u>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u>----- ----- ----- ----- --.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u>
---	---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 ~ ③ (생략)

④ 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이 지정해제된 경우 그

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
-----제5항-----

-----.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 ~ ③ (생략)

④ 제29조제5항제1호-----

지역에서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채석기간은 그 지정해제 처분이 있는 날까지로 한다. ⑤ ~ ⑦ (생략) 제49조(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2. <u>제29조제4항에</u>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3. (생략)	----- ----- -----. ⑤ ~ ⑦ (생략) 제49조(청문) ----- ----- ----- -----. 1. (생략) 2. <u>제29조제5항에</u> ----- ----- 3. (생략)
---	--